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천대학교의 산학협력 교육과 연구 및 사업을 촉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2.)

제2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성격) 산학협력단은 가천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서 1인 이사로 운영되는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산학협력단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번지,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②산학협력단 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포로 191번지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내에 둔다.

제5조(산학협력단의 사업)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교류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삭제 2015.12.12.)
10.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7-1-1~2 제7편 산학협력단

11.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12.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신설 2017.01.20.)
13.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6조(구성) 산학협력단에 단장, 부단장, 감사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② 단장은 대학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12.)

② 부단장은 대학 총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집행, 정산 등 회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비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② 감사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5급 이상의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수는 감사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1.2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01.20.)

④ 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비정기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감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감사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7.01.20.)

⑤ 정기감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으며 비정기감사는 총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때 및 소관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01.20.)

⑥ 기타 감사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비 감사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7.01.20.)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으로 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용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2.08.10)

⑥위원회는 제5조에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 총장이 발의한 사항 및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⑦기타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기구) ①산학협력단에 산학 및 연구 기획을 위한 산학기획팀, 협약 및 정산을 위한 산학협력팀, 인사, 총무, 구매, 자산 및 검수를 위한 산학관리팀, 재무 및 회계를 위한 재무회계팀, 정보시스템을 위한 전산팀, 감사 업무를 위한 감사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12.)

②(삭제 2015.12.12.)

③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2.08.10.)

④산학협력단의 필요에 따라 제1항 이외의 부서 및 기구를 둘 수 있다.(신설 2012.08.10)

제12조(인사) ①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본교의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 필요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조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본교의 교육, 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재산 및 회계

제13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4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14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7-1-1~4 제7편 산학협력단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신설 2012.08.10)
6. 이자수입
7.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8.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신설 2017.01.20.)
9.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5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학교기업의 운영비(신설 2012.08.10)
6.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7.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09.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신설 2017.01.20)
10. 기술지주회사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에 대한 기여자 보상금(신설 2017.01.20)
11.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16조(회계관리) ①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③학교기업은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08.10)

제17조(회계기관) ①단장은 산학협력단 주사무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12.)

②부단장은 분사무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분사무소의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2.12.)

제18조(지출방법)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관의 변경) ①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의 변경을 발의
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필
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수 있다.

제22조(해산)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2.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이 있는 때

②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해산시의 단장은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총장이 청산인을 임명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지침)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12.08.10)

제24조(공고) ①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에서 정한 공고사항
2.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대학신문 또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각 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산학협력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각 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7-1-1~6 제7편 산학협력단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